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북4구(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동북4구 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동북4구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라 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이하‘4개 자치구’라 한다)의 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사무소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제5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최초 정기회의 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윤번제로 실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및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정책의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3. 동북4구 권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4. 동북4구의 분야별 공동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
5. 동북4구 상호간 자료, 정보, 기술 교환
6.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를 주관하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의를 주관하는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받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주관하는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② 협의 안건의 합의는 위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를 주관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를 주관하는 회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협의 안건을 미리 준비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참석) ① 협의회에는 제3조의 자치단체로서 협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서의 장이 배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협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상급기관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의 주관하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사항 조정) 회장은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회 결정에 따라 상급기관에 조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3조의 자치단체로서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되, 협의안건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하고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정기회는 매년 분기별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을 협의회 개최 이전에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6조(규약개정) 협의회 규약의 개정은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보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타법개정]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